

1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「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」 고시의 교체 주기(24개월)가 도래함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쉐련 등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

쉐련, 파이프담배, 엽쉐련, 각련, 냄새 맡는 담배에 대한 10종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중 ‘피부노화’ 주제를 ‘치아변색’으로 교체하고 다른 9종의 주제는 교체 없이 경고그림 및 앞면 경고문구를 변경함

나.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

전자담배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과 쉐련형 및 기타유형으로 구분하여 경고그림 및 앞면 경고문구를 변경하고 썬는 담배, 물담배, 머금은 담배도 경고그림 및 앞면 경고문구를 변경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「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」 전부개정고시안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000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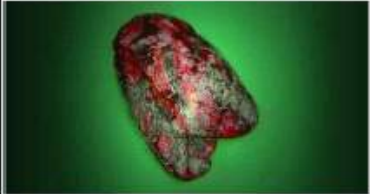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「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94호, 2016.6.22.)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8년 6월 22일
보건복지부장관




「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」 전부개정고시안

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]


구분	경고그림 (상단표기)	경고문구		
		앞면 (상단표기)	뒷면	옆면
1. 폐암		폐암 위험, 최대26배!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, 니켈, 벤젠, 비닐 크롤라이드, 비소,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.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. 후두암		후두암 위험, 최대16배!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	

구분	경고그림 (상단표기)	경고문구		
		앞면 (상단표기)	뒷면	옆면
3. 구강암		구강암 위험, 최대10배!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, 니켈, 벤젠, 비닐 크롤라이드, 비소,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.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심장질환		심장질환 사망, 최대4배!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	
5. 뇌졸중		뇌졸중 위험, 최대4배!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	
6. 간접흡연		어른의 흡연,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.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	
7. 임산부 흡연		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.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	

구분	경고그림 (상단표기)	경고문구		
		앞면 (상단표기)	뒷면	옆면
8. 성기능 장애		흡연은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.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, 니켈, 벤젠, 비닐 크롤라이드, 비소,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.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9. 조기사망		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.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	
10. 치아변색		흡연하면 치아의 색이 변합니다.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	
<p>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각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동일한 비율(앞·뒷면은 별개로 봄)로 적용토록 하여야 하며,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(size),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.</p>				

[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]

구분	경고그림	경고문구		
		앞면(상단표기)	뒷면	옆면
1. 전자담배 (니코틴이 포함된 용액)		니코틴에 중독, 발암물질에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니코틴에 중독, 발암물질에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2. 전자담배 (궤련형 및 기타 유형)		니코틴에 중독, 발암물질에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니코틴에 중독, 발암물질에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3. 씹는 담배		구강암 위험, 최대10배!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구강암 위험, 최대10배!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씹는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.
4. 물담배		폐암 위험, 최대26배!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폐암 위험, 최대26배!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물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.

구분	경고그림	경고문구		
		앞면(상단표기)	뒷면	옆면
5. 머금은 담배		구강암 위험, 최대10배!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구강암의 원인 흡연!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? 금연상담전화 1544-9030	머금은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.
<p>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(size),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.</p>				

부 칙

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